

### 3-2-3. 장학금지급규정

제정 1983. 04. 19

개정 2018. 12. 04

#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건학정신과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'88.08.02>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.<개정 '88.08.02>

**제3조(사무관장)** <본조삭제 '88.08.02>

#### 제2장 장학위원회

**제4조(설치와 구성)**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'95.04.13>

1.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.
2. 위원은 각 대학(원)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복지처장, 입학관리처장, 인력개발처장, 총무처장, 관리처장으로 한다.<개정 '03.08.21, '10.02.26, '12.02.28, '15.06.04, '18.12.04>
3.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.
4. 장학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처장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5. 학생들에게 원활한 상담 및 맞춤형 장학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.<신설 '12.02.28>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2.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3. 장학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장학생 배정에 관한 사항
5. 장학생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
6. 기타 장학금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5조의2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장이 된다. <개정 '15.06.04>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3장 장학금의 종류

**제6조의2(구분)**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
**제7조(교내장학금)** 교내장학금의 구분은 등록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교내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기탁 및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구분한다. 다만,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 <개정 '99.7.19>

1. 신·편입학 장학금<개정 '12.02.28>
2. 신입우수 장학금<삭제 '12.02.28>
3. 체육특기 장학금
4. 문예장학금<삭제 '03.2.10>
5. 경시대회장학금<개정 '03.2.10>

### 3-2-3. 장학금지급규정

6. 육영장학금
7. 우등장학금<개정 '97.2.5>
8. 특대장학금<개정 '97.2.5>
9. 공로장학금
10.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
11. 보훈 장학금
12. 일반장학금
13. 삼형제 재학 장학금<삭제 '17.11.02>
14. 자립장학금
15. 학자금대여<삭제 '08.12.4>
16. 근로장학금
17. 국가고시장학금
18. 해외유학장학금<삭제 '12.02.28>
19. 대학원 장학금
20. 외국인장학금
21. 후생복지장학금
22. 동창회장학금<삭제 '12.02.28>
23. 장학재단장학금
24. 출판장학금<삭제 '07.8.23>
25. 민간장학금
26. 주산장학금
27. <삭제'10.02.26>
28. <삭제 '17.01.03>
29. 수강장학금<삭제 '07..8.23>
30. 어학장학금<삭제 '12.02.28>
31. 형제재학장학금<삭제 '17.11.02>
32. 장애인 및 장애인자녀장학금<신설 '00.7.10,개정 '10.02.26>
33. 학업보조장학금<신설 '04.2.23>
34. 군교류장학금<신설 '06.2.23>
35. 교역자직계자녀장학금<신설 '06.2.23>
36. 송산장학금<신설'10.02.26>
37. 다자녀 장학금<삭제 '12.02.28>
38. 후마니타스 장학금<신설 '11.11.25>
39. 원광희망장학금<신설 '12.02.28, 개정 '14.02.24>
40. 어학연수장학금<신설 '12.02.28>
41. TOPIK우대장학금<신설 '12.02.28>
42. 역량장학금<신설 '12.12.24>
43. 장학사정관제장학금<신설 '14.02.24>
44. 학군장학금<신설 '15.02.23>
45. 전공현장실습장학금<신설 '15.02.23>
46. 학업장려장학금<신설 '17.01.03>
47. W-point장학금<신설 '17.01.03>
48. 가족사랑장학금<신설 '17.11.02>

### 3-2-3. 장학금지급규정

49. 기타장학금<신설 '11.11.25, 호변경 '15.02.23, '17.01.03. '17.11.02>

**제8조(교외장학금)** 교외 장학단체(국가장학 포함) 또는 개인이 장학금을 기탁하여 장학 내용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제시요건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다만, 국가장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지급한다.<개정 '12.02.28, '15.02.23>

1. 윤종익장학금<신설 '17.01.03>
2. 창업장학금<신설 '17.01.03>

## 제4장 장학생 선발 및 지급

**제8조의2(선발대상)** ①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,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4학년의 경우 졸업이수 학점에 이상이 없을 경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, 장학금은 정규학기(의학계열 편입·전과생 13, 14학기, 간호학과 편입·전과생 9, 10학기 포함) 내에서만 지급한다. <개정 '97.2.5, 단서 신설 '99.12.23, 개정 '10.02.26, '12.12.24, '15.02.23>

1. 직전학기 학업성적 장학종류별로 규정한 평균평점 이상인 자 <개정 '97.02.05, '10.02.26>
2. 해당 종류별로 지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
3.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<신설 '88.08.02>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과과정에 Pass/Fail의 성적평가로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경우,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을 적용한다.<항신설 '14.02.24>

**제9조(장학금의 신청)**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소속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'88.8.2>

**제10조(신청자 자격제한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 <개정 '96.5.22, '97.2.5>

1. <삭제 '98.11.04>
2. <삭제 '15.02.23>
3. <삭제 '98.11.04>
4.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
5.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되는 자

**제11조(장학생 선정 기준)**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
1.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를 선정한다.
2. 장학대상자의 가계사정을 각별히 고려한다.
3. 장학대상 중 면담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되 학년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.
4.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한다.<전문개정 '88.8.2>
5. 각종 경시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를 선정한다. <신설 '11.11.25>

**제12조(장학생 배정)** ① 장학금 지급인원 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대학장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학과별로 인원을 배정한다. <신설 '88.8.2>

③ 각종 경시대회 장학금 지급인원 배정은 경시대회 주관 부서장이 배정한다. <신설 '11.11.25>

**제12조의2(추천)**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. <개정 '88.8.2>

1. 지도교수는 장학금 수혜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순위를 결정한 후 학과장을 경유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한다.
2. 학장은 지도교수가 추천한 서류를 심사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명단을 학과별로 작성하

### 3-2-3. 장학금지급규정

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.

3. 각종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의 장학생 추천은 경시대회 주관 부서장이 그 명단을 작성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. <신설 '11.11.25>

**제13조(장학생의 확정)** 학생복지처장은 각 대학(원)장, 경시대회 주관부서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한 성적 및 해당사항들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장학생으로 확정한다.<개정 '88.8.2, '11.11.25>

**제13조의2(장학금지급)** 각종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조신설 '11.11.25>

가. 교내장학금: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장학금

나. 교외장학금: 외부기관의 지급기준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된 장학금

**제14조(장학생 명단작성 및 공고)** 학생복지처장은 확정된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대학(원)장, 경시대회 주관부서장에게 송부한다.<개정 '88.08.02, '11.11.25, '15.02.23>

**제15조(지급결정 유효기간)** 장학금의 지급 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. <개정 '88.08.02>

**제16조(지급방법)**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학생복지처는 그 명부를 작성하고 장학증서는 학장, 경시대회 주관부서장이 학생에게 직접 수여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장이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'88.08.02, '11.11.25>

**제17조(장학증서 현금화 방지)** <본조삭제 '15.02.23>

**제18조(지급결과보고)** 학생복지처장은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장학금의 지급 제한

**제19조(이중수혜금지)** ① 각종 장학금은 근로장학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중수혜를 받을 수 없다. 다만, 교내장학금 중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교외장학금은 예외로 한다. <단서신설 '11.11.25>

② <삭제 '11.11.25>

③ 1인이 2종이상의 수혜대상자로 선발될 경우에는 본인이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다. <개정 '92.04.02>

**제20조(실격)**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.

1.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
2. 휴학 또는 제적자

3. 인정 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.<신설 '97.02.05, 개정 '10.02.26>

4. 종별에 따라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인 자<개정 '97.02.05>

5.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명예를 실추케 하였을 경우

6. 이중수혜자인 경우(단, 교내외 기관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장학금 제외) <개정 '92.04.02, '11.11.25>

**제21조(장학생의 자격상실)**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. <개정 '88.8.2>

### 부 칙

① 이 규정은 198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

②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원광대학교장학위원회가 이를 따로 정한다.

③ 종전의 장학금지급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.

### 3-2-3. 장학금지급규정

- 부 칙(1988. 8. 2, 대학규정 제88-12호)  
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1991. 2. 26, 대학규정 제90-30호 )  
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1992. 4. 2, 대학규정 제92-9호 )  
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1995. 4. 13, 대학규정 제95-11호 )  
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1996. 5. 22, 대학규정 제96-09호 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1997. 2. 5, 대학규정 제96-43호 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1999. 7. 19 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1999. 12. 23 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2000. 7. 10 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2003. 2. 10 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2003. 8. 21 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2004. 2. 23 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2006. 2. 23 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2007. 8. 23 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2008. 12. 4)  
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2010. 02. 26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2011. 11. 25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2012. 02. 28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2012. 12. 24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2014. 02. 24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(2015. 02. 24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8조의2는 2015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### 3-2-3. 장학금지급규정

부 칙(2015. 06. 04, 직제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01. 0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7조제1항제28호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7조제1항제47호는 2017학년도 1학기 실적으로 2학기에 지급한다.

부 칙(2017. 11. 02)

이 규정은 2017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12. 0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3-2-4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

제정 1983. 04. 19

개정 2020 01. 10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규칙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급시안 작성)** 학생복지처장은 매 학기 다음과 같은 장학금 지급시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'88.8.2>

1. 교내장학금 대학(원)별 배정표<개정 '07.12.4>
2. 장학생 선정기준
3. 전학기 장학생 학과, 학년별 현황
4. 장학금 예산액
5. 이종추천방지를 위한 참고자료

**제3조(교내.외장학금 종류와 지급액)** 교내.외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'16.05.26., '17.01.03>

1. 신·편입학장학금<개정 '12.02.28>  
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고교내신 등급이 특히 우수한 입학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단, 매 학기말 학업성적이 신입학장학금은 평균평점 3.0 미만, 편입학장학금은 평균평점 2.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, 장학의 종류와 금액은 매 년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<개정 '12.02.28, '17.01.03>
2. 신입우수장학금<삭제 '12.02.28>
3. 체육특기장학금
  - 가. 체육특기자로 신·편입학한 자 중 본교 교기 육성종목 해당자로서 개인기능이 특히 우수하여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 자에게는 당해학기 납입금액 또는 납입금의 반액을 지급한다. 다만, 경기성적이 저조하거나 품행이 불량한 학생은 체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지급을 중단한다.<개정 '97.9.11, '10.02.26, '15.02.23>
  - 나. 체육특기자로 신·편입학한 자 중 본교 교기육성종목 해당자로서 각종 국.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성적과 학점에 제한을 받지 않고, 체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신설 '97.9.11, '15.02.23>
  - 다. 체육특기자로 신·편입학한 자 중 본교 교기육성종목을 제외한 종목 해당자로서 각종 국.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선수는 소속대학장의 요청에 따라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신설 '06.2.23, '15.02.23>
4. 문예장학금<삭제 '02.8.16>
5. 경시대회장학금<개정 '96.5.22, '02.8.16, '17.11.02 목신설 '17.11.02>  
당해년도에 본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시대회(음악, 무용, 국악, 미술, 문예, 일어, 한문, 영중어문)에 응시하여 최우수상을 받은 자로서 동일계열 입학자에게는 지정된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며,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직전학기(입학학기 제외) 학업성적이 3.0에 미달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.
  - 가. 1종 : 정규학기동안 등록금의 100%를 지급한다.
  - 나. 2종 : 1년간 등록금의 65%를 지급한다.
  - 다. 3종 : 입학학기에 한하여 등록금의 65%를 지급한다.
6. 육영장학금  
원불교 예비교역자로서 원불교학과에 입학한 자와 원불교 교정원에서 추천한 원불교학과 이외의

### 3-2-4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

학부(과)에 입학한 자(2명에 한함)에게 등록금을 지급한다. 다만, 매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0미만인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.<개정 '11.09.05>

#### 7. 우등장학금<개정 '98.11.4>

직전학기 학업성적 최우등생 및 우등생으로 타의 모범인 자 중 각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당해학기 등록금의 50%를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인원은 매 학기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<개정 '12.02.28, '17.11.02>

가. <삭제 '97.2.5>

나. <삭제 '97.2.5>

다. <삭제 '97.2.5>

라. <삭제 '97.2.5>

#### 8. 특대장학금<개정 '98.11.4>

직전학기 학업성적 최우등생으로 타의 모범인 자 중 각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는 등록금 전액 또는 등록금의 65%를 각각 지급한다. 다만, 지급 인원은 매 학기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<개정 '99.12.23, 12.02.28, '17.11.02>

#### 9. 공로장학금

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학생복지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.이상이어야 지급하며, 지급인원과 장학금액은 매 학년초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<개정'10.02.26, '12.02.28, '17.11.02>

가. <삭제'10.02.26>

나. <삭제'10.02.26>

다. <삭제'10.02.26>

#### 10. 교직원 직계자녀장학금<개정 '97.9.11>

가. 본교 및 부속기관(대학교병원 제외)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(교원: 정년과정전임, 직원: 일반·기술·별정·사서직)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로서 본교에 재학 중인 자의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이상인 자에게는 등록금을 지급한다.<개정 '15.02.23, '18.12.04>

나. 지급기준 : 동일학생이 12학기를 초과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. 다만, 의학계열 편입·전과생은 14학기 이내로 한다.<단서신설 '15.02.23>

다. 당해 교직원이 정년퇴직, 명예퇴직,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 전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는 졸업 시까지 이를 준용한다.

#### 11. 보훈장학금<개정 '94.11.14, '97.2.5>

교육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직계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매 학기말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1.5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.<개정 '12.02.28>

가. 보훈대상자 본인은 교비로써 납입금 전액을 지급한다.

나. 보훈대상자의 직계자녀는 교비로써 납입금 반액을 지급하고 반액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지급한다.

#### 12. 일반장학금<개정 '97.2.5, '99.12.23, '07.1.26>>

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이상인 자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등록금의 25%를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인원은 매 학기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<개정 '12.02.28, '16.05.26>

#### 13. <호삭제 '17.11.02>

#### 14. 자립장학금

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자 또는 보육원(아동양육시설)에 만 5년 이상 재원한 사실이 있



### 3-2-4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

는 자로서 해당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학비 지급요청이 있는 자에게 등록금의 65%를 지급한다. 다만,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0미만인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. <개정 '02.8.16, '17.11.02>

#### 15. 학자금대여<삭제 '08. 12.4>

#### 16. 근로장학금

본교 재학생중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을 원하는 자에게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교내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매월 근로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지급할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## 17. 국가고시장학금

국가고시(사법시험, 행정고등고시, 외무고등고시, 기술고등고시 및 공인회계사)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.<개정 '01.8.31>

가. 국가고시 2차합격자 : 졸업시까지 등록금의 65% 지급<개정 '08.12.4>

나. <삭제 '08. 12 4>

#### 18. 해외유학장학금<삭제 '12.02.28>

#### 19. 대학원장학금

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#### 20. 외국인장학금

외국인으로서 신.편입학한 학생은 고등학교, 대학, 토픽, 면접 성적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며, 재학생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에 따라 졸업시 까지 매학기 등록금의 30%~60%를 차등 지급하며,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다만, 본교와 교류대학의 장학금 운영에 관한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'88.8.2, '03.2.10, '04.2.23, '05.1.13, '08.2.26, '12.02.28, '12.06.19>

#### 21. 후생복지장학금

교내 각종 후생시설에서 얻은 순 이익금중 일부를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0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인원과 장학금액은 매 학기별로 학생복지처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'15.06.04, '17.11.02>

#### 22. 동창회장학금<삭제 '12.02.28>

#### 23. 원광장학재단장학금<개정 '97.2.5>

본교 내 장학재단 적립금의 과실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되, 봉사활동이 뛰어난 자, 효행이 타의 모범인 자, 소년소녀가장, 본교에 입학한 학생의 학부모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경우 각 대학과 학생복지처장에게 추천 의뢰하여 선발한다. 다만, 매년 지급할 장학금액 및 인원은 장학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결정하여 장학복지과에 통보한다.<개정 '04.2.23, '15.06.04>

#### 24. 출판장학금<삭제 '07. 8.23>

#### 25. 민간장학금

본교 민간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일정한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매년 지급할 장학금액 및 인원은 민간장학회장이 별도로 결정한다.

#### 26. 주산장학금

대우그룹과의 자매결연사업으로 기부된 일정액의 과실금으로 본교 재학생에게 매년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매년 지급할 장학금액 및 인원은 주산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27. 학자금융자장학금<삭제 '10.02.26>

#### 28. 능력장학금<삭제 '17.01.03>

#### 29. 수강장학금<삭제 '07.1.26>

### 3-2-4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

30. 어학장학금<삭제 '12.02.28>

31. <호삭제 '17.11.02>

32.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장학금<신설 '00.7.10, 개정'10.02.26>

본교의 재학생으로서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(중증) 경우 등록금의 50%를 지급하며, 부친 또는 모친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(중증) 경우 1명에 한하여 등록금의 50%를 지급한다. 다만,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이상이어야 지급한다.<개정'10.02.26, '19.10.01, '20.01.10>

33. 학업보조장학금<신설 '04.2.23, 개정'10.02.26, '12.02.28, 삭제 '15.02.23>

34. 군교류장학금<신설 '06.2.23, 개정 '06.8.31>

현역 군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<개정 '06.8.31>

35. 교역자 직계자녀 장학금<신설 '06.2.23>

원불교 교역자(전무출신에 한함) 직계자녀에게 졸업시까지 등록금의 65%를 지급한다. 다만,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36. 숭산장학금<신설'10.02.26, 개정 '17.11.02>

본교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에 바탕하여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학생 중 학생복지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이상이어야 지급하며, 숭산장학금의 종별, 지급인원과 장학금액은 매 학년 초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가. 예.체능, 문예, 학술부문에서 전국규모대회 최고입상자

나. 교내.외에서 대학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다. 각급 학생회 단체 임원<목신설 '17.11.02>

라. 품행이 방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<목신설 '17.11.02>

37. 다자녀 장학금<삭제 '12.02.28>

38. 후마니타스 장학금<신설 '11.11.25>

후마니타스장학위원회에서 선정, 공고된 도서에 대하여 논술, 토론, 시험, 퀴즈 등을 실시하고, 우수자 및 우수동아리(팀)에게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<개정 '13.08.28, '17.11.02>

가. 재학 중 각 분야별(논술, 토론, 시험, 퀴즈) 2회까지 가능하며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'13.08.28, '17.11.02>

나. 장학금액 및 인원은 후마니타스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다.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이상이어야 한다.

39 원광희망장학금<신설 '12.02.28, 개정 '14.02.24, '17.01.03>

국가장학금 지급조건에 충족된 학생 중 「장학금 지급 규정」 제8조의2(선발대상)에 해당되며,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 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장학금액 및 지급 방법은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40. 어학연수장학금<신설 '12.02.28>

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총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에게 해외 어학연수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장학금 지급방법 및 인원은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고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'19.10.01>

41. TOPIK 우대장학금<신설 '12.02.28>

외국인 신·편입생 입학 및 재학 시 토픽 4-6급 취득자에 한하여 해당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장학금 지급방법 및 인원은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고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42. 역량장학금<신설 '12.12.24>

재학생으로써 단과대학 자율예산을 재원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장이 추천한 자에게 역량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.

### 3-2-4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

#### 43. 장학사정관제장학금<신설 '14.02.24>

급격한 가계 곤란자에 대하여 장학금지급규정 제8조의2(선발대상) 적용을 받지 않고 각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장학금사정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은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44. 학군장학금<신설 '15.02.23>

학생군사교육단 소속 학생 중에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이상인 자로 학생군사교육단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한다. 다만,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.

#### 45. 전공현장실습장학금<신설 '15.02.23, 개정 '17.01.03>

전공현장실습 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, 평균평점이 2.0이상인 자로 주관 부서의 추천을 받아 지급한다. 다만,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#### 46. 학업장려장학금 <신설 '17.01.03>

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였으나 복학 시 등록금이 인화된 경우 그 차액을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대상자는 등록금 인하분이 발생한 자에 한한다.

#### 47. W-point장학금 <신설 '17.01.03, 개정 '17.02.21>

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 이상인 자 중 W-point 고득점자 순으로 매 학기 배정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며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 단, 장학금액 및 지급인원은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48. 가족사랑장학금 <호신설 '17.11.02>

당해학기에 2촌 이내 가족 2인 이상이 본교(학부만 해당)에 함께 재학중인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<개정 '19.10.01>

가. 1종 :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이상이며 2촌 이내 가족 2인이 함께 재학중인 경우 각각 등록금의 25%를 지급한다.

나. 2종 :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이상이며 2촌 이내 가족 3인이 함께 재학중인 경우 각각 등록금의 35%를 지급한다.

#### 49. 윤종익장학금<신설 '16.05.26., 호이동 '17.01.03, '17.11.02>

봉황인재학부 소속 학생 중에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이상인 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한다. 다만,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은 윤종익장학기금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# 50. 창업장학금 <신설 '17.01.03, 호이동 '17.11.02>

본교 재학생으로서 중소기업청 및 창업진흥원 지원 예산을 재원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창업지원단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은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#### 51.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 장학금<호신설 '19.10.01>

재학생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등록금의 25%를 지급한다. 다만,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.5 이상이어야 한다.

가.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
나.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자

#### 52. 기타 장학금<신설 '11.11.25, 호이동 '15.02.23, '17.01.03, '17.11.02, '19.10.01>

위 각 호의 장학금 외 특별히 지급할 장학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.

**제3조의2(장학금 배정)** ① 매학기 대학에 배정하는 장학금 지급인원은 각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. 다만, 장학금지급이 결정된 자는 재학생수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정한다.

② 근로장학생은 야간강좌 개설학과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대학별로 배정할 수 있다. <개정 '92.4.2>

**제3조의3(교외장학생 추천)** 교외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생 추천은 다음과 같이 한다. <개정

### 3-2-4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

'91.2.26>

1. 교외 장학단체에서 해당대학(과)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해당 대학에 이첩하여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명의로 발송한다.
2. 해당대학(계열 및 학과)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외장학생수의 대학별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복지처장이 대학을 선정하여 배정한다.
3.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.
4.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관리처에 입금시킨 후 동액수의 장학금 지급증서를 발급한다.

**제3조의4(지원자 구비서류)**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종별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단과대학 교학과를 통하여 장학복지과에 제출해야 한다.<개정 '15.02.23, '15.06.04, '17.11.02>

1. 교직원(교역자) 직계자녀장학금 : 재직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.<개정 '15.02.23, '17.11.02>
2. 보훈장학금 :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(국가유공자 자녀인 경우)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국가유공자 본인인 경우),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.<개정 '15.02.23, '17.11.02>
3. <삭제 '08.12.04>
4. <호삭제 '17.11.02>
5. 군교류장학금 : 재학증명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.<신설 '06.02.23, '15.02.23. 개정 '17.11.02>
6. 자립장학금 : 아동보육시설 등 보호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<호신설 '17.11.02>
7. 가족사랑장학금 :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<호신설 '17.11.02>
8.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 장학금: 장애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장애인 자녀만 해당)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<호신설 '19.10.01>
9.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장학금: 교육지원대상증명서(북한이탈주민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다문화가정)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<호신설 '19.10.01>

**제4조(근로장학생의 관리)** ① 매 학년초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장학생의 자격요건 및 근무조건을 제시한 근로장학생 추천요구서를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 인원배정을 요청한다.

- ② 학생복지처장은 각 부서에서 요청된 근로장학생 인원을 장학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대학에 배정한다.
- ③ 대학장은 배정된 인원을 소속 학과별로 재학생 인원에 비례하도록 배정하여 근무조건에 알맞는 인원을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정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추천한다.
- ④ 학생복지처장은 각 대학으로부터 선정한 추천인원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배치한다.
- ⑤ 학생복지처장은 매월 말일에 근로학생의 소속부서장이 제출한 근무실적 보고서에 의하여 근로장학생의 월 보수지급표를 작성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무과에 지급 의뢰한다.<개정 '15.06.04, '17.11.02>
- ⑥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수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 <개정 '92.4.2>

**제5조(학자금대여 운영)**<삭제 '08. 12 4>

**제5조의2(장학금의 지급)**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 당해학기 납입금액에서 학비 감면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 시에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<신설 '88.08.02, 개정 '15.02.23>

**제5조의3(유효기간)** 모든 장학금은 본인의 신청 및 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학기에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.<신설 '88.08.02

### 3-2-4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

개정 '15.02.23>

**제5조의4(장학생 교체추천)** 장학생으로 이미 추천받은 학생 중 교체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학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기간 이전에 교체신청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'88.08.02>

**제6조(보고)** 학생복지처장은 매 학기말 장학금 지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과 기타 장학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'88.8.2, 정부직제변경(교육부) '13.06.03>

**제7조(적용)**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<개정 '88.08.02>

#### 부 칙

이 시행세칙은 198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시행세칙은 198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85. 6. 21, 대학규정 제85-8호)

이 시행세칙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88. 8. 2, 대학규정 제88-13호)

이 시행규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1. 2. 26, 대학규정 제90-31호)

이 시행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2. 4. 2, 대학규정 제92-10)

① 이 시행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시행규칙의 제3조제16호는 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91학년도 이전 입학자중 학업성적이 3.5 이상은 전액, 3.5미만은 수업료, 3.0미만인 자는 장학금지급을 중단한다.

부 칙(1994. 3. 22, 대학규정 제94-05호)

이 시행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994. 11. 14, 대학규정 제94-29호)

이 시행규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6. 3. 5, 대학규정 제95-42호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6. 5. 22, 대학규정 제96-10호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7. 2. 5, 대학규정 제96-44호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7. 9. 11, 대학규정 제97-31호)

이 시행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(1998. 2. 21, 대학규정 제97-82호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 칙(1998. 11. 4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 칙(1999. 7. 19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 칙(1999. 12. 23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 칙(2000. 7. 10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# 3-2-4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

부 칙(2001. 2. 1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 칙(2001. 8. 31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 칙(2002. 8. 16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2. 10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8. 21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2. 23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1. 13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2. 23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8. 31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1. 26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8.23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12. 4)

이 시행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2.26)

① (시행일)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3조 제20호의 외국인장학금은 2009년 3월 1일 입학자부터, 동조 제31호의 형제재학장학금은 2008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12. 4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학자금대여를 받은 자중 퇴학 또는 제적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여 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.

② 학자금대여의 관리 및 상환 등 제반사항은 별도의 장학재단 정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.

부 칙(2010. 02. 26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09. 05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11. 25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02. 28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06. 19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3-2-4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

부 칙(2012. 12. 24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06. 03, 정부직제변경(교육부)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08. 28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02. 24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02. 23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06. 04, 직제규정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05. 26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01. 03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3조제1항제28호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7조제1항제47호는 2017학년도 1학기 실적으로 2학기에 지급한다.

부 칙(2017. 02. 21)

이 시행규칙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11. 02)

이 시행규칙은 2017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시행한다. 단, 제3조제1항제5호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8. 12. 04)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0. 01)

이 시행규칙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01. 10)

이 시행규칙은 2020학년도 장학생 선발부터 시행한다.

## 외부 장학금 대상자 선정 지침

명문 제정 : 2019.9.11

1. 외부장학금 대상자 선정은 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2.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- 1) 기부자의 제시 기준 : 필수적 충족 기준
  - 2) 동일 장학금 수령 경험 :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 선발
  - 3) 타 장학금과의 중복 여부 : 중복되지 않는 자를 우선 선발
  - 4) 교내외 활동 및 학교 발전 기여도
  - 5) 가정 형편
  - 6) 성적
  - 7) 구성원의 추천
3. 대상자수를 기부자가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4. 기부자가 기탁한 장학금은 '의료활동' '학술활동' 등 주제를 선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주제에 합당한 자를 대상으로 지침 2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.
5.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도교수 등 학내 구성원에게 대상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.
6.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에게 신청자를 공고하여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.
7. 지침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과 1-3학년을 우선 선발한다.
8. 장학금 수혜자는 명예 기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9. 다음의 장학금은 년 1회 지급하여야 한다.  
전북신협, 덴티움, 만송, 정성민 대표